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140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정동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2.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3. 15. 19,5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17.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89934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8. 4. ‘C는 원고에게 30,075,420원 및 그중 원금 18,234,838원에 대하여는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C의 모친인 망 E은 2018. 1.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F, G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C는 2018. 2. 2. 나머지 상속인들(피고, F,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2018. 2.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부채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인 2017. 3. 15.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피고 3/9, C와 F, G 각 2/9이고, C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C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상속포기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인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을 취득한 원인이 C의 상속포기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려면, C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C가 위와 같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주택

지층, 1층 및 2층 각 109.86㎡

(내역:지층:철근콘크리트조, 1,2층:벽돌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구리시 전 2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벽돌조 50.2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3분의 37.17 ㎡.

